

#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 2024.10.11.(금)



## 【모집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입주예정
'24.10.22.(화) ~10.25.(금) 1순위  '24.10.29.(화) 2순위	'24.11.12.(화)	'24.11.13.(수) ~11.22.(금) [등기우편접수]	대상자 별도통보	'25.04.02.(수)	'25.04.15.(화) ~04.18.(금)	'25.04.28.(월) ~06.27.(금)

## 【단지별 방문접수 일정】

방문 신청일	신청단지의 자치구
10월 23일(수)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10월 24일(목)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10월 25일(금)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 C O N T E N T S .....

1. 공급일정 .....	6
2. 신청관련 문의.....	7
3. 공급대상 .....	7
4. 임대금액 전환 안내 .....	13
5. 신청자격 .....	19
6. 신청 접수 안내 .....	22
7. 입주자 선정 .....	26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9
9. 서류제출 안내 .....	30
10.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32
11. 계약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안내 .....	33
12. 입주지정 기간 .....	34
13. 유의사항 .....	34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권역별 센터 안내 .....	37
15. 단지별 유의사항 .....	43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46
<별표2>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47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방법 안내

####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https://www.i-sh.co.kr/app>)이 원칙입니다.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로 청약 가능)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 인터넷 청약 방법

- 인터넷청약기간 : 2024.10.22.(화) 10:00 ~ 2024.10.25.(금) 17:00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 ([www.i-sh.co.kr/app](http://www.i-sh.co.kr/app))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로 청약가능, PC 및 모바일 이용]

##### ○ 방문접수 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4.10.23.(수) 10:00 ~ 2024.10.25.(금) 17:00

신청일	자치구
10월 23일(수)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10월 24일(목)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10월 25일(금)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 반드시 신청 단지 자치구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2순위 신청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으로만 진행합니다. (방문청약 없음)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청약접수 진행여부는 2순위 청약당일 2024. 10. 29.(화) 09: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 '신청대행'일 뿐이며, 신청자격 및 가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상 개인정보 오기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 최종 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인정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를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최종전입일**: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수 확인가능  
※ 2024.10.01.이후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예·부금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짐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전일까지 전환가입을 완료한 경우** 전환 전 납입실적도 가산하여 인정함.
  - **부양가족수**: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접수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지·신청유형(m), 가점사항 기재내용 등 신청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이번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3. 공급대상)**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거나 긴급 주거지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2026.04.02.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 입주자격 검증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동차,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출생자녀 별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 적용 안내

- 신청자에게 2023년 3월 28일(이하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 심사 시 기준금액에 아래 구분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기준일 이후(당일포함) 출생한 자녀만 1명인 경우 : 10%p
    - 기준일 이후(당일포함)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0%p
    - 기준일 이후(당일포함)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기준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 위 내용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출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사실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출생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공고문(5. 신청자격)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일정



## ▶ 모집공고 절차 및 일정

※ 공고일정은 내부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4.10.11.(금)	'24.10.22.(화) ~10.25.(금) 1순위  '24.10.29.(화) 2순위	'24.11.12.(화)	'24.11.13.(수) ~11.22.(금)  [등기우편접수]	대상자 별도통보	'25.04.02.(수)	'25.04.15.(화) ~04.18.(금)

##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

대 상 자	신청일정	신청방법								
<b>○ 1순위(선순위)</b>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2024.10.22.(화) 10:00 ~ 10.25.(금) 17:00	<b>인터넷청약</b> www.i-sh.co.kr/app								
<table border="1"> <thead> <tr> <th>방문 신청일</th> <th>신청단지의 자치구</th> </tr> </thead> <tbody> <tr> <td>10월 23일(수)</td> <td>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td> </tr> <tr> <td>10월 24일(목)</td> <td>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td> </tr> <tr> <td>10월 25일(금)</td> <td>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td> </tr> </tbody> </table>	방문 신청일	신청단지의 자치구	10월 23일(수)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10월 24일(목)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10월 25일(금)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2024.10.23.(수) ~ 10.25.(금) 10:00 ~ 17:00	<b>방문청약</b> 공사 별관 2층 대강당
방문 신청일	신청단지의 자치구									
10월 23일(수)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10월 24일(목)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10월 25일(금)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b>○ 2순위(후순위)</b>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2024.10.29.(화) 10:00 ~ 17:00	<b>인터넷청약</b> www.i-sh.co.kr/app								

-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청약접수 진행여부는 2순위 청약당일 2024. 10. 29.(화) 09: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순위 신청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으로만 진행합니다.(방문청약 없음)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날에만 가능하니 본인의 신청자격과 순위를 확인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별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2. 신청관련 문의



- ▶ 인터넷 청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00 ~ 13:00)
-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청약신청으로 청약과정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단지 정보 검색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SH주택정보 사이트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 3. 공급대상



- ▶ 공급호수 : 총 87개 단지 1,463세대 (예비입주자 모집세대수 포함)
- ▶ 공급대상 현황 및 금액

자치구 (신청일자)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m)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m)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예비 입주자 (B)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b>합 계</b>		<b>1,463</b>	<b>416</b>	<b>1,047</b>								
강동구 10월 23일(수)	1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천호1)	47	30	0	30	39,500	7,900	31,600	242,000	47.84	29.03	34.72	111.59
	2	SK북한산시티 (미아1-1)	32	60	30	30	11,730	2,346	9,384	160,200	32.79	16.723	10.717	60.23
	3	미아SH-ville (미아2)	30	6	3	3	23,820	4,764	19,056	235,600	30.13	14.06	38.7	82.89
	4	미아벽산 (미아1-2)	32	23	0	23	14,160	2,832	11,328	182,500	32.94	17.13	23.09	73.16

자치구 (신청일자)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예비 입주자 (B)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강북구 10월 23일(수)	5	삼각산아이원 (미아5)	24	24	2	22	12,310	2,462	9,848	124,400	24.053	14.861	18.298	57.212
관악구 10월 23일(수)	6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0	6	2	4	24,250	4,850	19,400	138,000	30.11	13.413	24.514	68.037
	7	관악드림타운 (봉천3)	32	50	10	40	11,360	2,272	9,088	157,100	32.76	16.48	12.83	62.07
	8	관악벽산블루밍	32	30	15	15	12,680	2,536	10,144	163,800	32.92	16.14	11.04	60.1
	9	관악푸르지오 (봉천7-2)	32	7	2	5	14,920	2,984	11,936	147,100	32.37	10.11	30.08	72.56
	10	봉천동아 (봉천2-2)	32	23	6	17	12,790	2,558	10,232	165,900	32.76	15.95	16.73	65.44
	11	봉천우성 (봉천7-1)	30	40	20	20	9,480	1,896	7,584	135,200	30.42	13.67	6.23	50.32
	12	신림SH-ville (신림7)	30	6	3	3	20,410	4,082	16,328	206,100	30.83	14.92	32.27	78.02
	13	신림동부 (신림5)	26	8	3	5	5,950	1,190	4,760	86,700	26.66	14.86	2.42	43.94
	14	구로두산 (구로6)	27	30	13	17	7,890	1,578	6,312	126,100	27.6	13.583	8.263	49.446
15	오류동부골든 (오류1)	32	20	10	10	9,610	1,922	7,688	136,800	32.97	17.601	7.021	57.592	
금천구 10월 23일(수)	16	관악벽산타운 (시흥2-1)	32	46	30	16	10,370	2,074	8,296	142,800	32.7	18.832	1.998	53.53
	17	시흥벽산 (시흥1)	32	60	8	52	11,270	2,254	9,016	159,700	32.76	15.936	12.988	61.684
노원구 10월 24일(목)	18	상계동아불암 (상계3-1)	27	32	20	12	9,040	1,808	7,232	131,800	27	12.99	7.26	47.25
	19	상계불암대림 (상계7)	33	13	5	8	13,140	2,628	10,512	152,400	33	16.15	3.72	52.87
	20	상계불암현대 (상계3-2)	27	30	12	18	8,560	1,712	6,848	131,000	27	12.946	8.045	47.991
	21	양지대림1 (중계4-1)	30	23	5	18	10,040	2,008	8,032	142,600	30.6	17.17	8.08	55.85

자치구 (신청일자)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예비 입주자 (B)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노원구 10월 24일(목)	22	학여울청구B (하계2B)	32	15	5	10	8,740	1,748	6,992	130,300	32.76	10.15	4.56	47.47
동대문구 10월 23일(수)	23	답십리동아 (답십리8)	31	16	6	10	10,690	2,138	8,552	146,300	31.77	14.52	6.1	52.39
	24	답십리두산 (답십리9)	32	8	2	6	15,220	3,044	12,176	159,000	32.93	14.26	10.87	58.06
	25	브라운스톤휘경 (휘경4)	39	5	0	5	24,640	4,928	19,712	170,400	39.24	17.09	0	56.33
	26	이문대림 (이문3)	30	6	0	6	14,570	2,914	11,656	147,200	30.113	15.268	31.856	77.237
	27	이문쌍용	30	6	0	6	11,800	2,360	9,440	162,000	30.36	16.12	15.66	62.14
동작구 10월 24일(목)	28	본동SH-ville	30	5	0	5	19,640	3,928	15,712	201,000	30.23	14.02	31.36	75.61
	29	본동한신희플러스 (본동2-3)	32	5	2	3	15,450	3,090	12,360	162,000	32.51	13.86	31.53	77.9
	30	사당신동아 (사당5)	32	8	0	8	15,650	3,130	12,520	165,500	32.76	14.54	14.9	62.2
	31	상도3쌍용	33	5	0	5	20,380	4,076	16,304	167,600	33.685	13.906	28.904	76.495
	32	상도SH-ville	32	50	35	15	18,310	3,662	14,648	183,300	32.43	14.06	21.6	68.09
	33	상도건영 (본동2-2)	32	23	13	10	9,350	1,870	7,480	91,900	32.8	15.03	6.48	54.31
	34	상도래미안1차 (상도2)	30	8	3	5	14,800	2,960	11,840	179,900	30.289	17.687	20.362	68.338
마포구 10월 24일(목)	35	상도삼호 (상도5)	32	15	0	15	6,630	1,326	5,304	92,100	32.84	13.457	6.711	53.008
	36	상도신동아 (상도1)	32	17	7	10	12,390	2,478	9,912	165,100	32.76	20.89	7.98	61.63
	37	공덕삼성 (공덕1)	32	8	0	8	11,220	2,244	8,976	150,300	32.77	16.07	10.42	59.26
	38	도화현대2차	27	29	7	22	8,850	1,770	7,080	127,500	27.72	14.76	3.65	46.13

자치구 (신청일자)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예비 입주자 (B)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마포구 10월 24일(목)	39	신공덕2삼성	33	12	2	10	14,920	2,984	11,936	188,200	33.19	11.85	45.27	90.31
	40	신공덕삼성	32	6	0	6	12,690	2,538	10,152	171,500	32.77	17.18	22.46	72.41
서대문구 10월 24일(목)	41	DMC래미안e편한세상 (가재울뉴타운3)	39	23	10	13	29,380	5,876	23,504	189,000	39.96	22.42	30.18	92.56
	42	냉천동부 (냉천)	28	10	0	10	15,070	3,014	12,056	156,100	28.05	13.84	10.79	52.68
	43	북가좌삼호 (북가좌2)	31	15	0	15	8,480	1,696	6,784	103,700	31.5	16.787	5.095	53.382
성동구 10월 25일(금)	44	왕십리텐즈힐2 (왕십리뉴타운2)	36	5	0	5	37,270	7,454	29,816	198,800	36.39	18.268	33.812	88.47
	45	청계벽산 (하왕3)	26	27	0	27	7,120	1,424	5,696	87,100	26.9	10.08	3.41	40.39
	46	하왕극동미라주 (하왕5)	32	7	2	5	13,800	2,760	11,040	171,500	32.76	16.05	17.56	66.37
	47	하왕금호베스트빌 (하왕1-3)	32	5	0	5	11,870	2,374	9,496	163,100	32.76	18.09	11.78	62.63
성북구 10월 25일(금)	48	e편한세상 (보문4)	31	6	3	3	32,900	6,580	26,320	170,500	31.48	16.42	28.57	76.47
	49	길음뉴타운3단지	30	13	0	13	18,090	3,618	14,472	171,000	30.61	16.63	34.76	82
	50	길음뉴타운4단지	30	18	3	15	14,380	2,876	11,504	136,900	30.15	13.51	26.22	69.88
	51	길음뉴타운7단지 (길음7)	32	5	0	5	28,844	5,769	23,075	244,700	32.36	16.9	34.45	83.71
	52	길음뉴타운8단지 (길음8)	33	9	3	6	30,735	6,147	24,588	254,600	33.99	18.39	33.24	85.62
	53	길음뉴타운9단지 (정릉길음9)	33	10	0	10	29,890	5,978	23,912	246,900	33.28	16.58	30.92	80.78
	54	돈암삼성 (돈암3-2)	32	29	12	17	9,160	1,832	7,328	135,700	32.49	14.81	6.04	53.34
	55	돈암풍림 (돈암3-3)	32	10	0	10	10,900	2,180	8,720	145,000	32.23	18.06	3.831	54.121

자치구 (신청일자)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예비 입주자 (B)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성북구 10월 25일(금)	56	동소문한진	32	25	8	17	5,410	1,082	4,328	63,900	32.49	12.24	0	44.73
	57	래미안석관	30	5	0	5	24,790	4,958	19,832	238,700	30.01	14.015	40.157	84.182
	58	래미안종암3차 (종암5)	31	12	6	6	24,370	4,874	19,496	218,700	31.05	16.16	28.52	75.73
	59	롯데캐슬 트윈골드 (길음역세권)	39	20	0	20	33,200	6,640	26,560	209,000	39.78	16.98	34.08	90.84
	60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	29	6	3	3	25,350	5,070	20,280	129,900	29.96	14.62	25.55	70.13
	61	상월곡동아 (상월곡)	31	6	3	3	12,690	2,538	10,152	159,000	31.59	17.472	6.345	55.407
	62	월곡두산	30	12	0	12	16,250	3,250	13,000	152,700	30.057	16.708	33.661	80.426
	63	정릉풍림 (정릉4)	32	13	0	13	15,430	3,086	12,344	157,000	32.76	19.954	35.141	87.855
	64	종암SH-Ville	30	14	4	10	16,060	3,212	12,848	176,100	30.34	11.52	26.06	67.92
	65	종암SK	26	17	0	17	9,270	1,854	7,416	126,900	26.28	17.351	4.268	47.899
양천구 10월 25일(금)	66	목동2차우성 (신정5)	32	20	0	20	8,550	1,710	6,840	123,500	32.76	13.98	6.72	53.46
	67	목동센트럴아파트위브 (신정1-1구역)	34	17	5	12	33,600	6,720	26,880	168,100	34.24	25.37	21.35	80.96
	68	목동현대B	32	12	0	12	10,010	2,002	8,008	111,800	32.76	14.51	5.47	52.74
	69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신정1-4)	36	12	0	12	32,110	6,422	25,688	190,000	36.81	19.94	31.47	88.22
	70	신정삼성 (신정6-2)	32	28	0	28	8,740	1,748	6,992	112,200	32.76	17.03	0	49.79
	71	신정제4구역	36	8	0	8	29,470	5,894	23,576	152,700	36.01	19.52	25.54	81.07
영등포구 10월 25일(금)	72	아크로타워스퀘어 (영등포1-4구역)	26	6	3	3	17,890	3,578	14,312	102,400	26.78	16.86	15.82	59.46

자치구 (신청일자)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예비 입주자 (B)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영등포구 10월 25일(금)	73	신길삼성 (신길2-3)	32	14	4	10	11,130	2,226	8,904	151,700	32.94	15.941	5.55	54.431
	74	힐스테이트 클래식안 (신길9구역)	39	5	0	5	30,830	6,166	24,664	157,100	39.96	18.62	30.83	89.41
용산구 10월 25일(금)	75	산천리버힐삼성 (산천삼성)	32	8	3	5	10,640	2,128	8,512	151,200	32.99	15.29	10.75	59.03
은평구 10월 24일(목)	76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수색13)	39	42	30	12	24,680	4,936	19,744	177,100	39.97	18.57	40.44	98.98
	77	DMC파인시티자이 (수색6)	39	35	20	15	29,810	5,962	23,848	185,400	39.62	21.84	28.55	90.01
	78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응암8)	31	14	0	14	23,260	4,652	18,608	152,800	31.91	16.23	31.09	79.23
	79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응암9)	32	12	0	12	23,590	4,718	18,872	151,800	32.16	15.86	30.72	78.74
	80	북한산래미안 (불광6)	37	16	2	14	37,050	7,410	29,640	330,800	37.621	14.97	58.827	111.418
	81	북한산힐스테이트 (불광7)	37	10	0	10	35,008	7,002	28,006	290,100	37.675	17.422	43.052	98.149
	82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불광3)	30	10	0	10	27,694	5,539	22,155	248,000	30.73	15.255	36.623	82.608
	83	수색대림 (수색2-1)	32	30	8	22	11,060	2,212	8,848	152,200	32.78	17.561	11.459	61.8
종로구 10월 24일(목)	84	무악현대 (무악1)	32	10	0	10	11,130	2,226	8,904	156,600	32.93	19.84	8.39	61.16
중구 10월 24일(목)	85	서울역 센트럴자이 (만리2구역)	39	5	0	5	36,430	7,286	29,144	156,900	39.9541	21.7274	25.9714	87.6529
	86	한진해모로 (하왕1-2)	27	8	3	5	9,090	1,818	7,272	125,300	27.27	11.84	5.16	44.27
	87	황학롯데캐슬 (황학)	33	5	0	5	22,930	4,586	18,344	255,500	33.62	19.96	22.99	76.57

- 양천구 목동2차우성(신정5)은 (주)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2호) 소유의 재개발임대주택입니다.
- 위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계약면적은 단지 내 대표 면적 금액으로, 층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배정된 등·호의 임대가격 및 계약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단지명이 유사한 경우 및 동일단지 내 신청유형(㎡)이 여러개인 경우가 있으니, 청약 시 신청단지명 및 신청유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후 변경 불가)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신청 시 「저층(1~3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에서 저층(1~3층)으로 동호배정하되 공급 상황 등에 따라 반드시 저층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층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당첨자 중 저층배정 되는 것이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 재개발임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므로 휠체어사용 세대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임대단지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 등으로 인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공가미발생으로 유효기간 내 공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상기 안내된 공가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숫자는 상호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임대금액 전환 안내



### ▶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예시)

자치구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으로 전환 시		보증금→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강동구	1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천호1)	47	39,500,000	242,000	65,500,000	96,800	15,800,000	291,300
강북구	2	SK북한산시티 (미아1-1)	32	11,730,000	160,200	28,950,000	64,000	4,690,000	174,800
	3	미아SH-ville (미아2)	30	23,820,000	235,600	49,140,000	94,200	9,520,000	265,300
	4	미아벽산 (미아1-2)	32	14,160,000	182,500	33,770,000	73,000	5,660,000	200,200
	5	삼각산아이원 (미아5)	24	12,310,000	124,400	25,680,000	49,700	4,920,000	139,700
관악구	6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30	24,250,000	138,000	39,070,000	55,200	9,700,000	168,300
	7	관악드림타운 (봉천3)	32	11,360,000	157,100	28,240,000	62,800	4,540,000	171,300
	8	관악벽산블루밍	32	12,680,000	163,800	30,280,000	65,500	5,070,000	179,600
	9	관악푸르지오 (봉천7-2)	32	14,920,000	147,100	30,730,000	58,800	5,960,000	165,700

자치구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으로 전환 시		보증금→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악구	10	봉천동아 (봉천2-2)	32	12,790,000	165,900	30,620,000	66,300	5,110,000	181,900
	11	봉천우성 (봉천7-1)	30	9,480,000	135,200	24,020,000	54,000	3,790,000	147,000
	12	신림SH-ville (신림7)	30	20,410,000	206,100	42,560,000	82,400	8,160,000	231,600
	13	신림동부 (신림5)	26	5,950,000	86,700	15,280,000	34,600	2,380,000	94,100
구로구	14	구로두산 (구로6)	27	7,890,000	126,100	21,440,000	50,400	3,150,000	135,900
	15	오류동부골든 (오류1)	32	9,610,000	136,800	24,310,000	54,700	3,840,000	148,800
금천구	16	관악벽산타운 (시흥2-1)	32	10,370,000	142,800	25,710,000	57,100	4,140,000	155,700
	17	시흥벽산 (시흥1)	32	11,270,000	159,700	28,440,000	63,800	4,500,000	173,800
노원구	18	상계동아불암 (상계3-1)	27	9,040,000	131,800	23,200,000	52,700	3,610,000	143,100
	19	상계불암대림 (상계7)	33	13,140,000	152,400	29,520,000	60,900	5,250,000	168,800
	20	상계불암현대 (상계3-2)	27	8,560,000	131,000	22,630,000	52,400	3,420,000	141,700
	21	양지대림1 (중계4-1)	30	10,040,000	142,600	25,370,000	57,000	4,010,000	155,100
	22	학여울청구B (하계2B)	32	8,740,000	130,300	22,740,000	52,100	3,490,000	141,200
동대문구	23	답십리동아 (답십리8)	31	10,690,000	146,300	26,410,000	58,500	4,270,000	159,600
	24	답십리두산 (답십리9)	32	15,220,000	159,000	32,300,000	63,600	6,080,000	178,000
	25	브라운스톤휘경 (휘경4)	39	24,640,000	170,400	42,960,000	68,100	9,850,000	201,200
	26	이문대림 (이문3)	30	14,570,000	147,200	30,400,000	58,800	5,820,000	165,400

자치구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으로 전환 시		보증금→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동대문구	27	이문쌍용	30	11,800,000	162,000	29,200,000	64,800	4,720,000	176,700
	28	본동SH-ville	30	19,640,000	201,000	41,240,000	80,400	7,850,000	225,500
동작구	29	본동한신희플러스 (본동2-3)	32	15,450,000	162,000	32,850,000	64,800	6,180,000	181,300
	30	사당신동아 (사당5)	32	15,650,000	165,500	33,430,000	66,200	6,260,000	185,000
	31	상도3쌍용	33	20,380,000	167,600	38,390,000	67,000	8,150,000	193,000
	32	상도SH-ville	32	18,310,000	183,300	38,010,000	73,300	7,320,000	206,100
	33	상도건영 (본동2-2)	32	9,350,000	91,900	19,230,000	36,700	3,740,000	103,500
	34	상도래미안1차 (상도2)	30	14,800,000	179,900	34,140,000	71,900	5,920,000	198,400
	35	상도삼호 (상도5)	32	6,630,000	92,100	16,530,000	36,800	2,650,000	100,300
	36	상도신동아 (상도1)	32	12,390,000	165,100	30,130,000	66,000	4,950,000	180,600
	37	공덕삼성 (공덕1)	32	11,220,000	150,300	27,370,000	60,100	4,480,000	164,300
	마포구	38	도화현대2차	27	8,850,000	127,500	22,550,000	51,000	3,540,000
39		신공덕2삼성	33	14,920,000	188,200	35,150,000	75,200	5,960,000	206,800
40		신공덕삼성	32	12,690,000	171,500	31,110,000	68,600	5,070,000	187,300
서대문구	41	DMC래미안e편한세상 (가재울뉴타운3)	39	29,380,000	189,000	49,690,000	75,600	11,750,000	225,700
	42	냉천동부 (냉천)	28	15,070,000	156,100	31,850,000	62,400	6,020,000	174,900
	43	북가좌삼호 (북가좌2)	31	8,480,000	103,700	19,630,000	41,400	3,390,000	114,300

자치구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으로 전환 시		보증금→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성동구	44	왕십리테크힐2 (왕십리뉴타운2)	36	37,270,000	198,800	58,630,000	79,500	14,900,000	245,400
	45	청계벽산 (하왕3)	26	7,120,000	87,100	16,480,000	34,800	2,840,000	96,000
	46	하왕극동미라주 (하왕5)	32	13,800,000	171,500	32,220,000	68,600	5,520,000	188,700
	47	하왕금호베스트빌 (하왕1-3)	32	11,870,000	163,100	29,400,000	65,200	4,740,000	177,900
성북구	48	e편한세상 (보문4)	31	32,900,000	170,500	51,220,000	68,200	13,160,000	211,600
	49	길음뉴타운3단지	30	18,090,000	171,000	36,460,000	68,400	7,230,000	193,600
	50	길음뉴타운4단지	30	14,380,000	136,900	29,100,000	54,700	5,750,000	154,800
	51	길음뉴타운7단지 (길음7)	32	28,844,000	244,700	55,154,000	97,800	11,530,000	280,700
	52	길음뉴타운8단지 (길음8)	33	30,735,000	254,600	58,095,000	101,800	12,290,000	293,000
	53	길음뉴타운9단지 (정릉길음9)	33	29,890,000	246,900	56,430,000	98,700	11,950,000	284,200
	54	돈암삼성 (돈암3-2)	32	9,160,000	135,700	23,750,000	54,200	3,660,000	147,100
	55	돈암풍림 (돈암3-3)	32	10,900,000	145,000	26,480,000	58,000	4,360,000	158,600
	56	동소문한진	32	5,410,000	63,900	12,280,000	25,500	2,160,000	70,600
	57	래미안석관	30	24,790,000	238,700	50,450,000	95,400	9,910,000	269,700
	58	래미안종암3차 (종암5)	31	24,370,000	218,700	47,880,000	87,400	9,740,000	249,100
	59	롯데캐슬 트윈골드 (길음역세권)	39	33,200,000	209,000	55,650,000	83,600	13,280,000	250,500
	60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	29	25,350,000	129,900	39,320,000	51,900	10,140,000	161,500

자치구	연번	단지명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으로 전환 시		보증금→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성북구	61	상월곡동아 (상월곡)	31	12,690,000	159,000	29,770,000	63,600	5,070,000	174,800
	62	월곡두산	30	16,250,000	152,700	32,670,000	61,000	6,500,000	173,000
	63	정릉풍림 (정릉4)	32	15,430,000	157,000	32,300,000	62,800	6,170,000	176,200
	64	종암SH-Ville	30	16,060,000	176,100	34,990,000	70,400	6,420,000	196,100
	65	종암SK	26	9,270,000	126,900	22,910,000	50,700	3,700,000	138,500
양천구	66	목동2차우성 (신정5)	32	8,550,000	123,500	21,820,000	49,400	3,420,000	134,100
	67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정1-1구역)	34	33,600,000	168,100	51,670,000	67,200	13,440,000	210,100
	68	목동현대B	32	10,010,000	111,800	22,020,000	44,700	4,000,000	124,300
	69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신정1-4)	36	32,110,000	190,000	52,520,000	76,000	12,840,000	230,100
	70	신정삼성 (신정6-2)	32	8,740,000	112,200	20,810,000	44,800	3,490,000	123,100
	71	신정제4구역	36	29,470,000	152,700	45,890,000	61,000	11,780,000	189,500
영등포구	72	아크로타워스퀘어 (영등포1-4구역)	26	17,890,000	102,400	28,900,000	40,900	7,150,000	124,700
	73	신길삼성 (신길2-3)	32	11,130,000	151,700	27,440,000	60,600	4,450,000	165,600
	74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신길9구역)	39	30,830,000	157,100	47,710,000	62,800	12,330,000	195,600
용산구	75	산천리버힐삼성 (산천삼성)	32	10,640,000	151,200	26,900,000	60,400	4,250,000	164,500
은평구	76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수색13)	39	24,680,000	177,100	43,710,000	70,800	9,870,000	207,900
	77	DMC파인시티자이 (수색6)	39	29,810,000	185,400	49,740,000	74,100	11,920,000	222,600

자치구	연번	단 지 명	신청 유형 (㎡)	기준 임대조건		임대료→보증금으로 전환 시		보증금→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은평구	78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응암8)	31	23,260,000	152,800	39,680,000	61,100	9,300,000	181,800
	79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응암9)	32	23,590,000	151,800	39,900,000	60,700	9,430,000	181,300
	80	북한산래미안 (불광6)	37	37,050,000	330,800	72,600,000	132,300	14,820,000	377,100
	81	북한산힐스테이트 (불광7)	37	35,008,000	290,100	66,188,000	116,000	14,000,000	333,800
	82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불광3)	30	27,694,000	248,000	54,344,000	99,200	11,070,000	282,600
	83	수색대림 (수색2-1)	32	11,060,000	152,200	27,430,000	60,800	4,420,000	166,000
종로구	84	무악현대 (무악1)	32	11,130,000	156,600	27,960,000	62,600	4,450,000	170,500
중구	85	서울역 센트럴자이 (만리2구역)	39	36,430,000	156,900	53,300,000	62,700	14,570,000	202,400
	86	한진해모로 (하왕1-2)	27	9,090,000	125,300	22,550,000	50,100	3,630,000	136,600
	87	향학롯데캐슬 (향학)	33	22,930,000	255,500	50,380,000	102,200	9,170,000	284,100

- 재개발임대주택 당첨 후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전환단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5. 신청자격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10. 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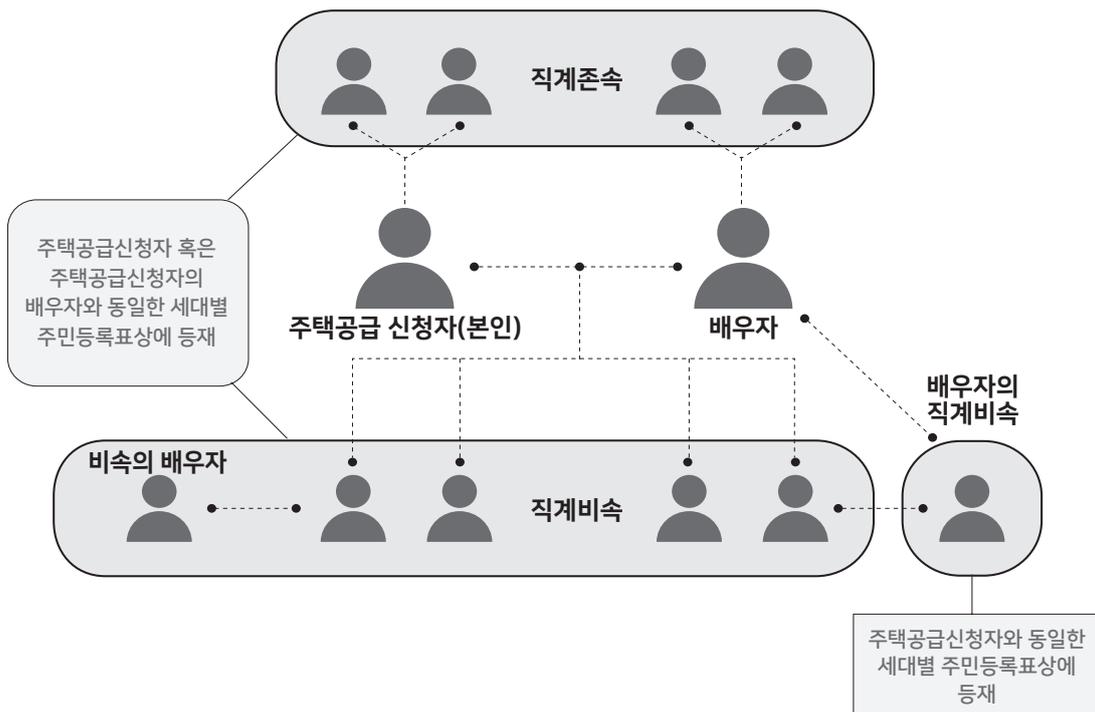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청약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공고일(2024. 10. 11.(금))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1순위			2순위		
	50%이하	①10%p가산	②20%p가산	70%이하	①10%p가산	②20%p가산	
소 득	1인	2,438,075	-	-	3,134,668	-	-
	2인	3,249,427	3,790,998	-	4,332,570	4,874,141	-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6,694,297	7,650,626	8,606,954
<p>※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p> <p>※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된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판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만 1명인 경우 : ①10%p가산 금액 적용</li>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②20%p가산 금액 적용</li>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1명 &amp;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②20%p가산 금액 적용</li> </ul> <p>※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며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수)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p>							
총자산	<p>■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b>34,500만원 이하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만 1명인 경우 : 38,000만원 이하</li>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41,400만원 이하</li>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1명 &amp;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41,400만원 이하</li> </ul>						
자동차	<p>■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b>3,708만원 이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만 1명인 경우 : 4,078만원 이하</li>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4,449만원 이하</li> <li>•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1명 &amp;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4,449만원 이하</li> </ul>						

※ 소득 및 자산 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5년 2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년 10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5년 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6. 신청 접수 안내



### ▶ 인터넷 청약안내

#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인터넷 신청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뱅크샐러드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9종)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 인터넷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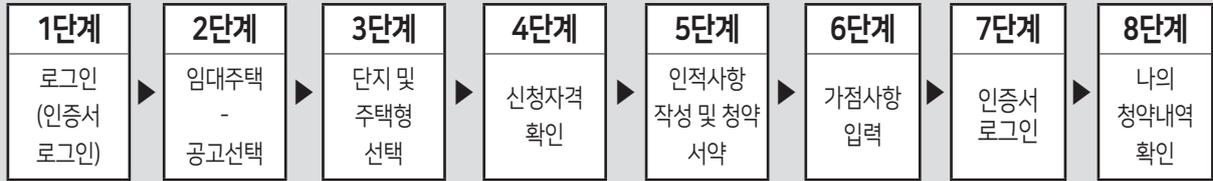
- **1순위 : 2024.10.22.(화) 10:00 ~ 10.25.(금) 17:00**
- **2순위 : 2024.10.29.(화) 10:00 ~ 17:00**

※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신청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신청가능여부는 2순위 청약접수 당일 오전 9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청약마감 시간(17:00)까지 신청을 완료(최종제출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가능)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순위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완료 후 착오로 인한 오기재 등을 포함한 모든 작성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청약안내

○ 이번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기간

- **1순위 : 2024. 10. 23.(수) 10:00 ~ 10. 25.(금) 17:00**

※ 2순위 신청접수는 별도의 방문청약을 받지 않습니다.(인터넷 청약만 가능)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 방문접수 유의사항

- ※ 방문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입력하는 '신청대행'일 뿐이며, 신청자격 및 가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상 개인정보 오기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 최종 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주소, 서울시 최종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인정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를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최종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 2024.10.01.이후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예·부금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짐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전일까지 전환가입을 완료한 경우** 전환 전 납입실적도 가산하여 인정함.
  - **부양가족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청접수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지·신청유형(m), 가점사항 기재내용 등 신청사항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인터넷 청약과 방문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은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회차, 가점사항, 월평균소득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만 공급세대수의 상위 200%내외에서 서류심사대상자를 결정하며, 제출서류와 신청 시 입력한 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해당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가점사항(부양가족수, 연속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및 가입은행명 등),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유무, 태아 수 등]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서류심사 시 해당 가점이 차감, 신청자격 결격,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가점을 차감하되,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착오기재, 누락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4.10.14.)부터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공사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순위확인서 제출 불요**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가입당시 본인의 가입형태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0회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는 1달에 1번 순위발생일에만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2024.10.01.이후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전일까지 종전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완료한 경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하며,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환가입 완료한 경우에 한함)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 2024-000581**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u>2012. 01. 04.</u>	2012. 01. 05.	<b>서울시</b> 구로구 A아파트
2014. 07. 25.	2014. 0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01. 04.	2012. 01. 0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07. 25.	2014. 0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u>2015. 12. 14.</u>	2015. 12. 17.	<b>서울시</b>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 성년(만19세)이후부터 인정),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타지역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7.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단 1인가구 70%이하, 2인가구 60%이하)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단 1인가구 90%이하, 2인가구 80%이하)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1순위			2순위		
	50%이하	①10%p가산	②20%p가산	70%이하	①10%p가산	②20%p가산
1인	2,438,075	-	-	3,134,668	-	-
2인	3,249,427	3,790,998	-	4,332,570	4,874,141	-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6,694,297	7,650,626	8,606,954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된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판단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만 1명인 경우 : ①10%p가산 금액 적용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②20%p가산 금액 적용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1명 &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②20%p가산 금액 적용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며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수)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태아 미포함)가 있는 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며**(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배점은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음.

#### ○ 가점기준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기준(국민임대 가점기준표 준용)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만 나이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② 부양 가족 수(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3인 이상	2인	1인
③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3자녀 이상	2자녀	<del>1자녀</del>
④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⑤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모, 배우자부모) : 3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구 분	3점	2점	1점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세부내용은 아래의 ※ 중소기업 내용 참조)			
⑧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⑨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4점 (세부내용은 아래의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 참조)			

※ 부양가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만19세 미만[2005.10.12.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4.10.11.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손자녀 수)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노부모의 배우자' 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소유여부 조사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하여야 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 : ① 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1인가구 90%이하,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1인가구는 90%이하,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단 1인가구는 90%이하,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8.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본인만 해당)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 및 계약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또는 계약사실확인원)로 판단함.

※ 유의사항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8.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2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10. 11.)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과 제출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가점을 차감하되,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11. 12.(화) 15: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당첨자로 조회할 경우 조회되지 않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11. 13.(수) ~ 11.22.(금)

-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통지 없이 결격 처리하므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2024.11.22.(금) 소인분까지만 유효  
- 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재개발임대 서류제출  
※ 일반우편, 택배,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비율

- 기본기준 : 공급세대수의 200%내외  
※ 커트라인 내 동점자의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9. 서류제출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 10. 11.) 이후 발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우편으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공통제출서류(심사대상자 전원 제출)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b>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제출(발급방법 동일)</li> </ul>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ul>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특정X, 일반X, <b>상세만 인정</b>)</li> <li>※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li> </ul>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b>의 동의를 받아 제출</li> <li>- 대상자 전원 성명을 <b>정자 자필서명</b>하여 제출(사인, 도장불가)</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①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정, ②사회취약계층 가정 중 “노부모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b>피부양자의 배우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서명) 받아 제출</b></li> <li>※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li> <li>※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를 통해 <b>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b></li> </ul>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추가 보완서류(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li> </ul>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b>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b>(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예비가구구성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li> </ul>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가점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li> </ul>	행정복지센터
② 중소기업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가입분)</li> <li>• 재직증명서</li> <li>•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b>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점수인정이 되지 않습니다.</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공단</li> <li>• 해당직장</li> <li>• 중소기업벤처기업부(☎135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a href="http://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a>) 등기소</li> </ul>
③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또는 기능등급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날인 필수)</li> </ul>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일군위안부 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단 1인가구 90%이하, 2인가구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b>제출서류 없음</b> (공사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의뢰하여 가점가능여부 공문회신 예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단 1인가구 90%이하, 2인가구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구청</li> <li>• 정부24홈페이지</li> <li>• 북한이탈주민포털</li> </ul>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단 1인가구 90%이하, 2인가구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서(자치구 확인)</li> <li>•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시설의 장</li> <li>• 해당구청</li> </ul>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li> </ul>	행정복지센터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li> <li>• (차상위계층)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책정기간 기재),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⑥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li> </ul>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li> </ul>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가점대상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 과정에서 수 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동호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입주자 퇴거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 약 2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 발표를 통해 공급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6.04.02.**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예비자가 아닙니다.)
- 예비입주자만 모집하는 단지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동호추첨 및 당첨발표는 공가발생 및 예비순번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후 잔여발생분에 대해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계약을 등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5.04.02.(수) 15: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당첨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 당첨자발표는 내부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당첨안내 및 임대차계약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인적사항 변경(개명)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연락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미통보 및 부정확한 주소 기재 등에 따른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11. 계약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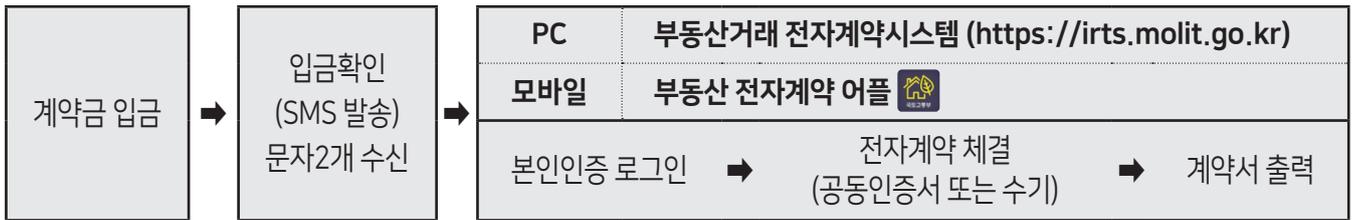


▶ 계약기간 : 2025.04.15.(화) ~ 04.18.(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 온라인 및 방문계약 일정은 계약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2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문자, 즉 2번의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 방문계약 안내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방문계약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영수증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대리인 신분증 ④ 계약금납부영수증 ⑤ 위임장(공사 양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함.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온라인계약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입주지정 기간 [2025.04.28.(월) ~ 2025.06.27.(금)]

※ 내부 공급 일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입주지정기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3.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갱신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ul> <p>*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p> <p>*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24.01.05.)에 따라 자동차가액 초과 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68 1205 1428 1608">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및 가점사항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li> </ul>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①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신청으로 중복신청하거나 ②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③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재개발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b>청약신청 및 서류제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상황 등에 따라 모집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입니다.</li> <li>•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해당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li> <li>•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b>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b>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b>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b>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착오작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b>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b>해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b>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b> 합니다.</li> <li>•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허위기재 등에 대한 가점을 차감하되,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li> </ul>
<b>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층·고층 등 선호하지 않는 동호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li> <li>•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중복 입주할 경우 전부 계약해지 및 퇴거하여야 합니다.</li> </ul>
<b>당첨 및 계약취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수,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 소득입증, 가점관련 서류, 심사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가점이 차감되거나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li> <li>•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b>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b>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li> <li>•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 가점사항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당첨자 발표이전에 주택,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li> <l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입주 후에도 주택소유가 확인 될 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li> <li>• 심사기간 중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합격자발표 후 당첨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 이전 신청자가 사망하는 경우 당첨자격은 타인에게 승계 또는 상속되지 아니하며 자동 소멸됩니다.</li> </ul>
<b>예비입주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b>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6.04.02.까지입니다.</b></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가 미발생으로 <b>유효기간 내 공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b></li> <li>• 예비입주자만 모집하는 단지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동호추첨 및 당첨발표는 공가발생 및 공급순번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li> <li>•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에 의거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및 제49조 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전대 금지 제49조 8에 의거 4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ul> </li>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 벽지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li> <li>• 본 공고문의 청약저축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li> <li>• 재개발임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므로 휠체어사용세대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권역별 센터 안내



- ▶ 임대주택 도로명 주소는 단지연번 순으로 정렬
- ▶ 금회 공급단지는 이미 공급하고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남은 공가로서 **현장여건상 견본 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니** 하단의 "임대주택 단지 정보 검색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위치 및 교통편은 해당 관할센터(아래 전화번호 참조)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임대주택 단지정보 검색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SH주택정보 사이트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연번	단지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인근 전철역	역과의 거리	총 임대세대수	난방 방식	최초 입주	최고 층수
1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천호1)	강동구 올림픽로78길 60	02-6946-3600~1	천호역	438m	117	개별	2024	40
2	SK북한산시티 (미아1-1)	강북구 솔샘로 174	02-983-0093	솔샘역	306m	1497	개별	2001	20
3	미아SH-ville (미아2)	강북구 삼양로 246-14	02-945-1921	삼양역	200m	57	개별	2007	7
4	미아벽산 (미아1-2)	강북구 솔샘로 159	02-982-0485	우이신설역	396m	490	개별	2002	18
5	삼각산아이원 (미아5)	강북구 삼양로19길 113	02-981-2793	미아사거리역	1.6km	673	개별	2004	25
6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관악구 청룡10길 45	02-883-9891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756m, 1.2km	294	개별	2019	14
7	관악드림타운 (봉천3)	관악구 구암길 106	02-3285-5302	봉천역	1.5km	1843	개별	2001	24
8	관악벽산블루밍	관악구 양녕로 117	02-3285-9614	봉천역	1.3km	799	개별	2003	22
9	관악푸르지오 (봉천7-2)	관악구 청림5길 28	02-882-3225	서울대입구역	1.9km	392	개별	2004	20
10	봉천동아 (봉천2-2)	관악구 관악로37길 20	02-884-9524	서울대입구역	996m	829	개별	1999	24
11	봉천우성 (봉천7-1)	관악구 관악로30길 40	02-889-4785	서울대입구역	1.1km	717	개별	2000	21
12	신림SH-ville (신림7)	관악구 난곡로 80	02-862-2144	신림역	3.1km	150	개별	2007	15
13	신림동부 (신림5)	관악구 신원로 26	02-857-6463	신림역	422m	96	개별	1993	16

연번	단지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인근 전철역	역과의 거리	총 임 대세 대수	난방 방식	최초 입주	최고 층수
14	구로두산 (구로6)	구로구 도림로 59	02-839-2051	남구로역	383m	442	개별	1999	21
15	오류동부골든 (오류1)	구로구 고척로 49	02-2614-5688	오류동역	687m	304	개별	1997	20
16	관악백산타운 (시흥2-1)	금천구 금하로 793	02-808-7361	금천구청역, 석수역	2.2km	564	개별	1998	20
17	시흥백산 (시흥1)	금천구 금하로 796	02-892-2856~7	금천구청역, 석수역	2.0km	1288	개별	2002	20
18	상계동아불암 (상계3-1)	노원구 덕릉로112길 13	02-3391-5525	당고개역	500m	434	개별	2000	22
19	상계불암대림 (상계7)	노원구 덕릉로94가길 41	02-939-5484	상계역	600m	206	개별	1999	17
20	상계불암현대 (상계3-2)	노원구 덕릉로118길 27	02-3391-3331	당고개역	500m	472	개별	2000	22
21	양지대림1 (중계4-1)	노원구 덕릉로73길 31	02-932-5265	중계역, 노원역	1km	468	지역	1999	23
22	학여울청구B (하계2B)	노원구 한글비석로 6	02-973-2685	하계역	490m	378	중앙	2001	18
23	답십리동아 (답십리8)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0	02-2213-8626	답십리역	780m	492	개별	1999	18
24	답십리두산 (답십리9)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 21-1	02-2213-5741	답십리역	974m	310	개별	2000	12
25	브라운스톤휘경 (휘경4)	동대문구 망우로20길 86	02-2246-3322	회기역	837m	78	개별	2012	14
26	이문대림 (이문3)	동대문구 이문로54길 16	02-969-1480	신이문역	374m	181	개별	2003	15
27	이문쌍용	동대문구 한천로58길 75-45	02-957-9351	신이문역	300m	245	개별	2001	22
28	본동SH-ville	동작구 노량진로22길 60	02-822-7923	노들역, 상도역	478m, 1.1km	176	개별	2006	17
29	본동한신희플러스 (본동2-3)	동작구 매봉로 99	02-814-6975	노들역, 상도역	503m, 814m	134	개별	2004	18
30	사당신동아 (사당5)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02-599-6159	이수역	903m	110	지역	1999	10
31	상도3쌍용	동작구 상도로 107	02-812-2517	신대방삼거리역	385m	65	개별	2004	12
32	상도SH-ville	동작구 상도로53길 70	02-822-6950	송실대입구역	980m	953	개별	2006	15
33	상도건영 (본동2-2)	동작구 만양로 26	02-813-8133	상도역, 노들역	724m, 753m	552	개별	1997	18

연번	단지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인근 전철역	역과의 거리	총 임 대세 대수	난방 방식	최초 입주	최고 층수
34	상도래미안1차 (상도2)	동작구 등용로 37	02-815-6523	장승배기역	385m	164	개별	2002	18
35	상도삼호 (상도5)	동작구 상도로 407	02-825-6525	송실대입구역	444m	221	중앙	1994	17
36	상도신동아 (상도1)	동작구 만양로 19	02-3280-5300	장승배기역	645m	925	중앙	2000	25
37	공덕삼성 (공덕1)	마포구 마포대로 115-8	02-3275-2597	공덕역	225m	226	개별	1999	20
38	도화현대2차	마포구 새창로8길 72	02-3275-1972	공덕역,마포역	642m, 847m	793	개별	1998	20
39	신공덕2삼성	마포구 만리재로 74	02-718-9748	공덕역	865m	103	개별	2001	11
40	신공덕삼성	마포구 백범로37길 6	02-703-8120	공덕역	532m	376	개별	2000	19
41	DMC래미안e편한세상 (가재울뉴타운3)	서대문구 수색로 100	02-302-3105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2km	629	지역	2012	35
42	냉천동부 (냉천)	서대문구 독립문로14길 64-6	02-313-1340	서대문역	628m	76	개별	2001	11
43	북가좌삼호 (북가좌2)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02-302-3751	증산역	1.4km	267	개별	1995	18
44	왕십리텐즈힐2 (왕십리뉴타운2)	성동구 마장로 137	02-2297-9901	신당역	760m	211	개별	2014	13
45	청계벽산 (하왕3)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02-2291-3553	상왕십리역	600m	510	개별	1996	15
46	하왕극동미라주 (하왕5)	성동구 난계로 73	02-2282-4206	신금호역	1.0km	191	개별	2002	18
47	하왕금호베스트빌 (하왕1-3)	성동구 난계로 114-31	02-2291-3567	상왕십리역	500m	274	개별	2001	18
48	e편한세상 (보문4)	성북구 보문사길 40	02-928-0046	보문역	523m	79	개별	2014	15
49	길음뉴타운3단지	성북구 길음로13길 39	02-914-3133	길음역	950m	282	개별	2005	16
50	길음뉴타운4단지	성북구 길음로 118	02-914-4003	길음역	950m	276	개별	2005	15
51	길음뉴타운7단지 (길음7)	성북구 길음로13길 22	02-914-5841	길음역	950m	99	개별	2010	13
52	길음뉴타운8단지 (길음8)	성북구 길음로 33	02-941-0594	길음역	950m	120	개별	2010	14
53	길음뉴타운9단지 (정릉길음9)	성북구 길음로9길 50	02-912-3927	길음역	387m	242	개별	2010	15

연번	단지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인근 전철역	역과의 거리	총 임 대세 대수	난방 방식	최초 입주	최고 층수
54	돈암삼성 (돈암3-2)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02-921-5115	길음역	500m	736	개별	1999	23
55	돈암풍림 (돈암3-3)	성북구 북악산로 898	02-927-6550	성신여대입구역	800m	309	개별	1999	17
56	동소문한진	성북구 성북로4길 52	02-921-6985	한성대입구	1.5km	580	중앙	1996	20
57	래미안석관	성북구 화랑로 214	02-962-6028	돌곶이역	387m	80	개별	2009	10
58	래미안종암3차 (종암5)	성북구 종암로24가길 80	02-909-1643	월곡역	530m	188	개별	2010	21
59	롯데캐슬 트윈골드 (길음역세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11	02-944-8000~1	길음역	238m	65	개별	2024	35
60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	성북구 보문사길 111	02-927-9110	보문역	782m	208	개별	2017	14
61	상월곡동아 (상월곡)	성북구 장월로1길 28	02-943-4388	상월곡역	180m	278	개별	2002	20
62	월곡두산	성북구 오패산로 46	02-942-8560	월곡역	461m	458	개별	2003	16
63	정릉풍림 (정릉4)	성북구 솔샘로25길 11-14	02-912-4866	솔샘역	728m	332	개별	2003	20
64	종암SH-Ville	성북구 종암로9길 71	02-921-2460	고대역	1.5km	104	개별	2007	13
65	종암SK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	02-911-8710	월곡역	850m	465	개별	1998	21
66	목동2차우성 (신정5)	양천구 목동남로4길 6-46	02-2654-2454	양천구청역	983m	1140	지역	1998	15
67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정1-1구역)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17	02-2699-8011	신정네거리역	1.5km	355	개별	2020	23
68	목동현대B	양천구 신목로 10	02-2647-8610	오목교역	824m	564	지역	1996	20
69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신정1-4)	양천구 중앙로29길 61	02-2690-0941	신정네거리역	860m	160	개별	2014	20
70	신정삼성 (신정6-2)	양천구 신목로 5	02-2654-9436	오목교역	958m	506	지역	1995	22
71	신정제4구역	양천구 중앙로36길 15	02-2655-0934~5	신정네거리역	803m	185	개별	2016	22
72	아크로타워스퀘어 (영등포1-4구역)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10	02-2068-5941~2	영등포시장역	273m	200	개별	2017	35
73	신길삼성 (신길2-3)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02-836-3272	신풍역, 신길역	1.2km, 1.5km	387	개별	2001	20

연번	단지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인근 전철역	역과의 거리	총 임 대세 대수	난방 방식	최초 입주	최고 층수
74	힐스테이트 클래식 (신길9구역)	영등포구 신길로28길 9	02-833-9266	신풍역	620m	266	개별	2020	29
75	산천리버힐삼성 (산천삼성)	용산구 효창원로13길 7	02-714-5940	효창공원역	1km	363	개별	2000	20
76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수색13)	은평구 수색로 322	02-2039-1680	수색역	672m	226	개별	2023	15
77	DMC파인시티자이 (수색6)	은평구 은평터널로 15	02-6951-4206	수색역	604m	208	개별	2023	12
78	백련산힐스테이트2차 (응암8)	은평구 백련산로2길 42	02-3151-0411	새절역, 녹번역	1.1Km, 2.1Km	255	개별	2012	15
79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응암9)	은평구 백련산로2길 46	02-3151-0411	새절역, 녹번역	1.1Km, 2.1Km	219	개별	2012	15
80	북한산래미안 (불광6)	은평구 불광로2길 41	02-387-3094	불광역	700m	135	개별	2010	10
81	북한산힐스테이트 (불광7)	은평구 통일로 792	02-389-7727	불광역	668m	188	개별	2011	12
82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불광3)	은평구 불광로14길 10-4	02-355-4055	독바위역	400m	147	개별	2010	10
83	수색대림 (수색2-1)	은평구 은평터널로 66	02-308-9854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7km	464	개별	2001	15
84	무악현대 (무악1)	종로구 통일로 246-11	02-734-0448	독립문역	500m	550	개별	2000	22
85	서울역 센트럴자이 (만리2구역)	중구 만리재로 175	02-362-9951	서울역	800m	228	개별	2017	25
86	한진해모로 (하왕1-2)	중구 왕십리로 39길 30	02-2253-3601	상왕십리역	477m	116	개별	2000	12
87	황학롯데캐슬 (황학)	중구 청계천로 400	02-2048-6114	동묘앞역	500m	336	개별	2008	33

## [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위치 안내 ]

관할센터	전화번호	주소 및 오시는 길
<b>강동</b>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동구)	02-6946-3600~1	○ 주소 : 강동구 상일로 6길 51(상일동) 다올빌딩 5층 -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도보18분 - 버스 : 3321 - '삼성엔지니어링' 하차 370, 341 - '강동첨단업무단지·상일여고입구' 하차
<b>강북/성북</b>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북구, 성북구)	02-944-8000~1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11층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간선버스 : 101, 120, 106, 107, 108 '수유(강북구청)역' 정류장 하차, 쌍문동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b>관악/동작</b> 주거안심종합센터 (관악구, 동작구)	02-828-5100~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b>구로/금천</b> 주거안심종합센터 (구로구, 금천구)	02-6340-9000~1	○ 주소 : 구로구 오리로 1102-6 천이타워 3층 - 지하철 7호선 천왕역 4번 출구(광명시 방향) 도보7분 - 천왕역 1번 출구에서 버스 6640A번 연지타운2단지 하차
<b>노원</b> 주거안심종합센터 (노원구)	02-3399-0000~1	○ 주소 : 노원구 덕릉로 688 우리빌딩(기업은행 상계역 지점) 4층 - 지하철 4호선 상계역 1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1224, 1138, 1139, 1140 하차 후 도보 5분
<b>동대문</b> 주거안심종합센터 (동대문구)	02-6496-5400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5,6층 - 지하철 신설동역 5번 출구에서 하차 후 도보로 3분 - 버스 : 105, 201, 260, 261, 262, 270, 271, 272, 420, 720, N13, N26, 2233, 6002 '신설동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5분
<b>마포</b> 주거안심종합센터 (마포구)	02-380-0100~1	○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기업은행 마포역지점) 10층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50m - 지하철 6호선 공덕역 8번 출구에서 도보 800m
<b>은평/서대문/종로</b> 주거안심종합센터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02-6910-9400~1	○ 주소 : 은평구 진관2로 15-34 3층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바로 앞 건물 - 버스 : 17, 19, 19-1, 30, 31, 34, 360, 567, 730, 799, 704, 708, 720 구파발역 롯데몰, 구파발역 2번 출구
<b>성동</b> 주거안심종합센터 (성동구)	02-6990-5200	○ 주소 : 성동구 왕십리로 21나길 5, 2층(행당동 298-8) - 지하철 2,5호선 왕십리역 10번 출구에서 행당시장 방향 도보 10분 - 버스 : 463, 2016, 4211 '왕십리역'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b>양천</b> 주거안심종합센터 (양천구)	02-2620-6700~1	○ 주소 :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분 - 버스 : 부천98, N65, 571, 603, 640, 650, 6211, 6624, 6628, 6630, 6638, 6649, 6640A, 6640B, 양천02 '오목교역' 하차
<b>영등포</b> 주거안심종합센터 (영등포구)	02-2620-6700~1	○ 주소 :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분 - 버스 : 부천98, N65, 571, 603, 640, 650, 6211, 6624, 6628, 6630, 6638, 6649, 6640A, 6640B, 양천02 '오목교역' 하차
<b>용산</b> 주거안심종합센터 (용산구)	02-2087-6601	○ 주소 : 용산구 백범로99길 40(용산베르디옴프렌즈) 101동 2층 -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8번 출구에서 도보 166m
<b>중구</b> 주거안심종합센터 (중구)	02-6909-9300~1	○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8층 - 지하철 5, 6호선 청구역 2번 출구 방향(하이마트방향 도보2분)



## 15. 단지별 유의사항



### 단지별 유의 사항(공통)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배정이 되며, 동일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가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로 기 완공된 주택이며 계약 후 입주지정일내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벽지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도로·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상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확인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임대정보 → SH주택정보(새창)
-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등 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준공된 지 오래된 단지는 자료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관할 센터에 문의해야 함.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부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세탁기 설치위치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슴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 상의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침실 및 거실 바닥 마감재로 강화마루가 시공되는 세대의 경우, 강화마루 들뜸 및 벌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가식 시공 특성상 자재의 신축 팽창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평형별 및 세대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층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주변 동에 소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함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 변경일
4.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보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하며, **당시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소명이 불가합니다.**)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1.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별표2>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제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입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li> <li>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li> </ul>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자동차, 부동산,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5년 2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4년 10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5년 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간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일 기준 액면가액</li> <li>• 예수금 : 조사일 기준의 잔액</li> <li>• 연금저축 : 조사일 기준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 조사일 기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조사일 기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총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b>마이니스트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b>)</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b>이 외 개인 간 사채 인정불가</b>)</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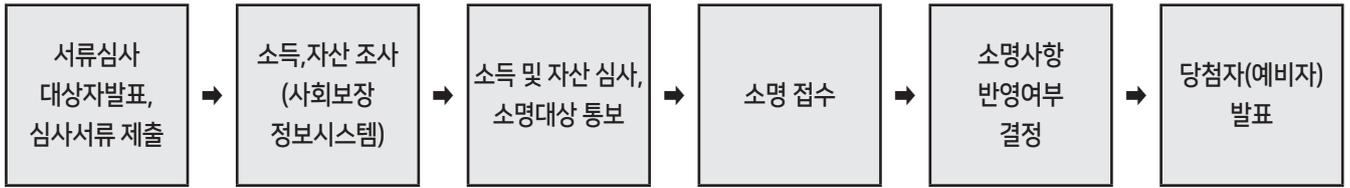
## ▶ 자산 중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 **서류 심사대상자 심사서류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2024년 10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임대청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력하시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약관련 사항, 이메일주소
-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청약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청약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청약도 철회한 것으로 처리),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나의 청약 내역" 메뉴에서 회원 본인의 과거 청약내역 확인하는 서비스는 포함) 이 달성된 후 또는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청약관련 전달사항 통보 및 보완자료 요청 경로 확보	
청약관련사항	- 배우자정보 및 청약관련저축 등의 가점항목으로 청약 자격 확인에 이용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IP주소, 접속로그, 청약일시	- 청약신청 확인용도로 이용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래의 경우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청약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확인 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세대원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행정안전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금액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아래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를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시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지정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 식별 및 인증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업무 수행 -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나의 청약내역" 메뉴에서 회원 본인의 과거 청약내역 확인하는 서비스는 포함)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청약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확인 시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세대원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공급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행정안전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 (주소(세대주),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세대주), 전입일/변동일(세대주 및 세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재외국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동거인(세대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당첨 내역 및 납입회차·금액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야만 청약 가능)

동의인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 M E M O •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최종 당첨자 발표
2024.11.12.(화) 15시 이후	2025.04.02.(수) 15시 이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3456**